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보건소, 종합병원 등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9. 30. ~ 11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

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항목 및 횟수는”을 “항목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식품위생법」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건강진단 항목 (제2조제1항 관련)

대상	건강진단 항목
식품 또는 식품첨가물(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·소독제는 제외한다)을 채취·제조·가공·조리·저장·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. 다만,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	1. 장티푸스(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) 2. 폐결핵 3. 전염성 피부질환(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건강진단 항목 등) 「식품 위생법」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<u>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</u> <u>다.</u> <u><신 설></u>	제2조(건강진단 항목 등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항목은</u> ----- --. ② 「식품위생법」 제40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 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 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 야 한다.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「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 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 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 을 유예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 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
<u><신 설></u>	
<u><신 설></u>	

<u>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.</u>
